

베트남의 外國人投資關聯法制

1993. 7.

연구자 : 최 철 영(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 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目 次

I. 베트남의 對外開放政策背景과 外國人投資環境	3
II. 베트남의 外國人投資關聯法制 概觀	5
1. 外國人投資에 관한 法律	6
2. 外國人投資法施行令	11
3. 輸出加工區(EPZ)에 관한 規則	13
III. 베트남·中國·北韓의 外國人投資관련法制 比較	14
1. 外國人投資企業의 活動期間	15
2. 經營權 및 利潤分配	16
3. 勞働者雇傭	17
4. 全額 外國人投資企業	18
5. 外國人投資企業과 관련된 租稅法制	19
IV. 結 語	25
<부록> 外國人投資에 관한 法律	31

I. 베트남의 對外開放政策背景과 外國人投資環境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政策으로 인한 舊소련의 아시아 社會主義國家에 대한 지원중단과 인도차이나 共產圈國家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共產主義輸出戰略의 실패 그리고 인도차이나 공산권국가의 경제상황과 상반되는 동남아시아 시장경제체제 開途國의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 등 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國際政治-經濟的 條件의 變化는 베트남으로 하여금 '도이모이(刷新)' 政策 이라는 개혁정책의 채택을 피할 수 없도록 하였다.¹⁾ 이에 따라 베트남정부는 대내외적 경제개혁의 본격화와 함께 外交政策도 과거 '新冷戰時代'의 理念主導에서 국가간의 무역확대와 기술이전, 투자확대 등을 통한 자국의 경제개발이라는 實利主義中心으로 전환하고, 캄보디아駐屯 베트남軍의 철수, 對中國관계개선, 아세안 友好協力條約加入, NIES국가들과의 貿易協定 또는 投資保障協定 締結, 미국과의 지속적인 關係改善努力 등 대외개방을 위한 국가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베트남정부는 1992년의 憲法改正을 통해 정치체계의 커다란 변혁을 이루었다. 즉 과거 黨의 指導理念에 종속되어있던 行政府首班(總理)의 권한확대를 통해 국가정책운영에 대한 지도력을 행정부에게 부여함으로써 行政府가 자신의 책임하에 '도이모이' 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베트남정부는 현재 직면해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① 지속적인 물가상승 抑制와 재정통화분야 및 시

1) 1986년 채택된 도이모이정책은 아시아역내경제 및 세계경제에의 참여와 對外開放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확대, 시장경제요소의 적극적인 도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가격의 安定化, 상업활동개발 ② 엄격한 法適用 ③ 사회경제의 운용에 있어 秩序의 確立 ④ 부패 및 밀수의 防止와 賣春根絶 ⑤ 정책의 完決性推進 ⑥ 다양한 경제구성요소를 위한 여건마련 ⑦ 적절한 정책의 彈力的 運用, 직업훈련계획의 현실화, 資金構造改善, 사회보험정책의 완성, ⑧ 문화, 예술, 교육, 인구, 산아통제, 공공보건의 보호, 과학과 기술의 개발등에 관한 政府規制의 實效性 增進을 위한 안정화 및 조직화 ⑨ 전략적 특정지역을 비롯한 國防力の 強化 ⑩ 行政 및 司法節次의 改革 등 10대 課業에 중점을 둔 1993년의 事業計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6월 초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린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각료 이사회에서 舊소련과 東歐유럽국가들의 경제지원을 목표로한 「舊소련 경제 협력센터」의 支援對象에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베트남을 포함시킬 것이 제의된 점이나 베트남政府和 國際聯合開發計劃(UNDP)의 주도하에 계획되고 있는 베트남支援國際會議 개최 등은 베트남의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92년 12월 22일 베트남과 公式의 外交關係를 回復하였다.²⁾ 양국간의 외교관계수립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진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有·無形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未修交狀態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베트남투자자에 대한 法的 保護를 양국간의 投資保障 및 貿易關聯協定の 締結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의 베트남총리의 訪韓시에 체결된 「韓·베트남 貿易協定」은 韓·베트남간의 經濟協力增進에 커다란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西方國家의 對베트남투자는 베트남정부가 1987년 12월 「外國人投資에 관

2) 베트남은 '92년 말 현재 총 118개 국가와 外交關係를 수립하고 있다.

한 法律'(Law on Foreign Investment)을 공포한 이래 현재까지 50억달러 규모의 資本登錄과 함께 40여개 국가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直接投資를 하는 등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비록 초보적 단계이기는 하지만 활력있는 경제적 여건속에서, 아직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對베트남禁輸措置에도 불구하고 40여개국에 의한 對베트남투자현황은 베트남의 경제적 잠재력이 계속적으로 先進 資本輸出國家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對베트남經濟交流를 지원하고,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改正된 베트남의 外國人投資關聯法規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兩國政府次元에서의 투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 추진되어야 할 協定의 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베트남의 外國人投資關聯法制 概觀

베트남국회는 도이모이政策의 제2단계 진입을 위한 경제구조 및 재정적 지원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대한 法的, 制度的 뒷받침을 목적으로 정치적 안정속에서 市場經濟의 活性化와 經濟改革의 制度化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도이모이' 政策의 기본적인 노선에 입각하여 '92년 4월 新憲法을 채택하였으며 同年 9월의 最高人民會議를 통하여 기존 정치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이루었다.³⁾ 그리고 '92년 12월 23일에는 外國人投資法의 全面改正案을 승인하

3) 改正憲法에서는 과거 黨의 下部機關이던 최고인민회의(국회) 議長, 각료 평의회(행정부) 議長의 權限과 機能을 強化하여 黨에 집중되었던 權力을 국회와 행정부로 配分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와 행정부에 대한

고 이와 동시에 베트남에 대한 투자의 안정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刑法
과 訴訟法의 改正 및 補完을 토의하였다. 또한 '93년 4월 16일에는 '92년의
외국인투자법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外國人投資法施行令
(Decree No.18/CP)을 공포하였다.

한편 베트남에는 '87년의 外國人投資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외국인투
자법시행령,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환
관리법,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법, 세관법, 매출세법, 소득세법, 특별수출
가공구설립에 관한 규칙 등 30개가 넘는 관련법규가 발표·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合作企業解散法 등이 아직 초안단계에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規制의 세부사항에 관한 法律體制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
며 運用方針이 결정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도이모이정책의
가속화와 世界投資市場與件의 변화 등으로 인해 法律의 改廢가 빈번하기 때
문이며, 따라서 그 운용에 있어서도 자본투자국과 상당한 法解釋上의 差異
가 있어 투자자를 혼란케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 外國人投資에 관한 法律

1987년 12월에 처음 공포된 「外國人投資에 관한 法律」(이하 “外國人投資
法”이라 한다)은 1987년 12월에 공포되었으며, 同法은 미국의 對베트남 經
濟制裁와 각종 投資制限措置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다른 서방국가의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적인 社會主義國家의 그것보다 내용에 있어서 개방성
과 탄력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간단·명료하
게 투자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88년 外國人投資法

黨(共產主義理念)의 指導가 弱化되었음을 의미한다.

施行令이 마련되었으나, 외국자본의 對베트남투자는 베트남측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단지 무역과 일반소비재의 제조·수출 및 부동산 개발 등 投資回收가 빠른 부문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정부는 외국자본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90년 6월 外國人投資法을 개정하였으며, 이어 91년 2월 同法의 施行令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外國人投資法은 투자원금의 회수, 과실송금의 보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용 및 국유화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外國人 投資에 대한 保障을 強化하고 외국인의 최저 자본출자비율을 총자본금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며 투자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투자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國家協力投資委員會(SCCI)가⁴⁾ 50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90년에 개정된 外國人投資法은 외국의 기업과 개인의 베트남 투자를 장려하고 다양한 경제분야에 속해있는 베트남의 기업이 외국과의 投資協力을 확대하는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12월에 대폭적인 改正이 이루어 졌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個人企業의 외국과의 協力參與 許容

베트남은 '90년에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法人資格을 가진 個人經濟組織(有限責任會社 및 株式會社)에게 외국과의 直接經營協力を 허용한데 이

4) 외국인투자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베트남정부의 외국투자관리기관은 國家協力投資委員會(State Committee for Cooperation and Investment : SCCI)이다. SCCI는 외국인의 베트남投資案件을 허가하는 主務部署로 모든 상업활동은 이 기구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SCCI는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審査를 종료하여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投資承認은 경영합작계약의 경우 경영허가서, 합작기업과 순수외국투자기업의 경우 投資許可書와 定款登錄證의 발급을 통해 이루어 진다.

어 '92년 改正外國人投資法에서는 個人企業에게 까지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의 經濟組織 및 個人과 모든 형태의 直接投資協力を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活動時限 延長

개정전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 자본이 있는 企業의 活動時限을 20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천연자원개발, 큰 投資資本이 요구되는 사업, 건설공정기간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긴 사업에 대해서는 50년까지 활동시한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지난 5년간의 外國人投資法 시행경험을 통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가들의 외국인투자법과 비교해 볼때, 대규모 프로젝트,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공정, 공업단지의 조성, 공업용나무재배 등과 같은 프로젝트의 活動時限延長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번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의 활동시한은 정부가 각 프로젝트 별로 결정하며 그 최장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國會常任委員會의 결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시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최대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活動期間을 延長하였다.

(3) 輸出加工區에 관한 法條項 新設

베트남정부는 그 동안 외국자본의 投資留置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根據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輸出加工區(Export Processing Zone, 또는 EPZ : 이하 特區라 한다)에 관한 法律條項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특별수출가공구의 건설 및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特區는 '91년 11월 정부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되었으며 特區에 관한 제반사항은 '91년 10월 공포되고 '92년 2월에 개정된 「輸出加工區에 관한 規則」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베트남의 국회를 통과한 法律이 아닌 行政府의 條例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法的 根據가 불안

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개정 외국인투자법은 제19조에 特區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였다.

(4) BOT(Build-Operation-Turnover)建設受注方式 導入

베트남의 국가관계기관은 외국투자자와 國內 社會間接資本의 건설에 관한 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경영-양여(Build-Operation-Turnover: 이하 BOT라 한다)건설 수주방식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BOT方式은 社會間接資本의 建設에 있어 외국기업이 建設費用을 투자하고 투자비용의 회수와 이익의 획득에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同 施設을 운영한 뒤에 시설을 投資誘致國에 無償讓與하는 건설수주방식이다. 外國人投資法은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국내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BOT건설 수주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BOT契約 規定內에 외국조직,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여 法的 安定性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5) 法律의 改正과 投資者의 權利保障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관련법규의 改正으로 인하여 許可를 받은 經營合作契約(Contractual Business Co-operation)에 참여한 당사자와 외국투자자가 있는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국가는 投資者의 權益에 대하여 합당한 解決方法을 모색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의 權利保障을 위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의 法制가 갖는 不安定性을 보완하여 외국인투자자의 權益을 法的으로 保障하고자 하는 것이나 보장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은 立法趣旨을 半減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經營合作契約은 새로운 合作會社나 法人을 구성하지않고 외국인투자자와 베트남의 합작당사자 兩側이 契約에 의해 권리·의무만을 규정하고 베트남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형태로서, 합작기업과 다른 점은 경영합작의 당사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의 목표와 관련한 契約의 存續期限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契約終了時 資本金의 회수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6) 企業의 銀行口座開設에 관한 規定의 改正

개정된 外國人投資法은 外國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이 베트남銀行 또는 베트남에 설치한 外國銀行 支店에⁵⁾ 베트남通貨와 外國通貨의 口座를 개설하도록 하고, 특별히 베트남 中央銀行의 承認을 받은 경우 外國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해외에 있는 은행에 資本借入口座를 개설하도록 허용하였다.

(7) 순수 外國자본기업에 대한 稅制상의 優待措置

종전의 外國인투자법에는 外國자본과 베트남자본의 合作企業에만 인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稅制側面의 優待措置를 전액 外國人投資企業에게도 확대하여 전액외국인투자기업은 企業所得이 발생한 年度부터 所得稅를 최대 2년간 免除받고 이어서 2년간 소득세의 50%를 減免받도록 하였다.

(8) 베트남측 投資持分の 점진적 확대

개정 外國人投資法에서는 合作企業에 있어서 베트남측 資本投資 比率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베트남기업이 해당 企業主와 合意하여 外國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의 자본지분을 점진적으로 買入하는 과정에 대한 規定을 보완하였다. 즉, 정부가 결정한 주요 經濟單位(economic bases)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합작기업의 法定資本중 베트남측의 投資資本의 比率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데 합의하도록 하고, 전액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政府의 決定에 따라 전액외국인투자기업주와의 합의에 입각하여 베트남기업은 주요 經濟單位의 資本을 점진적으로 買入하여 전액외국인투자기업을 합작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

5) 한국은 新韓銀行이 호치민市에 사무소설립內認可를 취득하여 금년 중에 營業을 개시할 예정이며, 第一銀行은 93년 2월 3일 베트남의 對外貿易銀行과 合作으로 호치민市에 퍼스트비나은행을 開店하였다.

2. 外國人投資法施行令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내각평의회는 1988년 9월 5일 外國人投資法施行令(Decree No.139/HDBT)을 공포하였으며 1990년 6월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991년 2월 同法の 施行令(Decree No.28/HDBT)을 공포한바 있다. 그러나 '92년 12월 23일에 외국인투자법의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베트남 내각평의회는 '93년 4월 16일에 총 105個 條文의 개정 外國人投資法施行令을 공포하였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私企業法 및 會社法에 따라 설립되는 모든 기업은 베트남의 法規가 금지하고 있는 사업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국가경제분야에서 外國人投資當事者와 협력 및 투자와 관련된 기업활동을 직접수행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會社法과 私企業法에 규정된 분야에서의 기업설립은 반드시 총리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외국투자당사자와의 협력 또한 會社法 및 私企業法の 規制에 따라야 한다.

둘째, 합자기업에 대한 資本出資에 관해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규정의 내용은 우선 외국인소유자본과 국내기업 및 개인의 기타 자본은 합자기업의 法定資本내에서 합리적인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天然資源의 형태나, 土地, 水面, 海面 등의 형태로 자본의 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베트남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외국투자당사자와의 협력에 있어 모든 국내 潛在力의 開發을 촉진한다는 의미와 함께 베트남 天然資源의 濫用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베트남측 당사자 出資持分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둘로 나누어, 合資企業의 경우 합자계약을 체결할때 계약 당사자가 베트남측 출자지분의 확대를 위한 시기와 몫을 명규하도록 하고, 전액 外國人投資

企業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협력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자의 관리, 兩者 協約을 근거로한 베트남 당사자측의 자본의 일부매수를 인가하기 위한 시기와 지분의 몫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네째, 외국인투자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프로젝트의 活動期限이 베트남정부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활동기한은 베트남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최장 70년을 넘지 못한다. 모든 프로젝트의 활동기한은 國家 協力投資委員會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은행계좌개설과 관련하여 시행령은 貸主가 借主에게 외국에 있는 은행계좌개설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베트남國家銀行(State Bank of Vietnam)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여섯째, 개정된 外國人投資法에 새로이 규정된 특별수출가공구 및 건설-경영-양여(BOT)계약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施行令은 이 문제를 정부의 개별적인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10월 18일 시행령 제 322호에 관련되어 공표된 베트남 特別輸出加工區에 관한 規則은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건설-경영-양여계약과 관련해서는 국가협력투자위원회가 외국인전문가와 협력하여 수 개월 내에 정부의 承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여 政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번째, 外國人投資法의 개정은 법령과 투자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일부 개정 조항은 이미 발행된 투자허가장 및 사업허가장의 조항과 비교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投資者의 利益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하고 있으며 同 施行令은 이 문제를 투자자와 프로젝트대상의 변경, 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稅金의 減免, 투자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고려한 법에 따른 문제의 해결,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미 발행된 許可狀에 따른 사업운영

의 허가 등과 같은 合意方式을 제안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종래의 시행령과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는 개정시행령의 특징은 所得稅와 관련된 규칙이다.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해서 개정시행령은 소득세의 단계를 네단계로 단순화했다. 이는 투자의 형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주요분야와 산업 및 개발예상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정이라는 미시적인 필요측면에서 규정되어진 것이다. 또한 과거 합작기업에만 부여되던 法人稅 減免制度를 순수외국투자기업에도 확대적용하고 있다.

3. 輸出加工區(EPZ)에 관한 規則

베트남정부는 외국인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칙으로서 '91년 10월 18일 정부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輸出加工區에 관한 規則」(「Regulations on the Export Processing Zones in Vietnam」, Decision No. 322/HDBT(18/10/1991): 이하 特區規則이라 한다)을 공포하였다. 이 규칙에 의하면 特區는 제품의 수출 및 생산과 제품의 수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中心産業地域으로 특구내의 모든 투자가는 수출물품의 제조, 하청 또는 조립이나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종사할 수 있다. 베트남 내에서 特區設立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곳은 호치민시내의 사이공特區와 탄투언特區(남부) 및 광남-다낭지역의 다낭特區(중부) 등이 있으며 베트남정부는 그 외에 하노이 및 하이퐁 등지에 特區(북부)의 추가설립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베트남의 特別加工區는 향후의 주된 集中投資對象地域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特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92년 2월 개정된 特區規則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Ⅲ. 베트남·中國·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法制 比較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3국은 모두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국내에 外國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對外經濟開放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라는 점에서 共通點을 갖고 있다. 더우기 베트남은 중국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모범으로 삼아 중국의 經濟特區方式을 受容하고 전액 외국인출자를 허용하며 조세감면 등 投資誘引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중국과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국은 국내부존 천연자원의 규모,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정도, 잠재적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에 있어서 評價가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또한 對外開放과 국내경제에의 市場經濟體制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외경제개방관련 法制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의 측면에서 볼때 중국의 비교적 앞선 법제의 내용을 베트남이 신속히 흡수하여 뒤따르고 있고 북한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의 立法에도¹⁾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여건이나 투자현황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여기서는 베트남·중국·북한 등 아시아 공산권 3국의 外國人投資法制의 내용을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기간, 경영권 및 이윤분배, 노동자고용, 전액외국인투자기업, 조세관련법제의 순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다.

1) 북한은 '92년 4월 29일 社會主義憲法을 개정하고 同年 10월 5일에는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등을 그리고 '93년 1월 31일에는 外國人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外貨管理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결정하였다.

1. 外國人投資企業의 活動期間

베트남의 外國人投資法은 외국인투자형태로서 經營合作契約(Contractual Business Cooperation)과 合資企業(Joint Venture Enterprise) 그리고 全額 外國人投資企業(Enterprise With 100% Foreign Owned Capital)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고 할 수 있는 企業은 외국인이 投資持分을 所有하는 合作投資企業과 전액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은 대규모 프로젝트,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공정, 공업단지의 조성, 공업용나무재배 등과 같은 프로젝트의 활동시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외국인투자자본이 있는 企業의 活動期間을 최장 50년까지는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프로젝트에 대한 활동시한을 최대 7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하였다.

북한의 外國人投資法에 의하면 外國人投資企業은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등으로써 북한법상의 法人形態를 갖추어야하며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활동기간이 불확실하지만 國家는 外國人投資者와 外國人投資企業의 설립에 필요한 土地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해 주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법에 의한 法人形態가 일반적이거나 合資經營方式이 갖는 法的 硬直性 등 각종 장애의 회피, 출자지분 이상의 이익배분의 추구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발전한 합작경영기업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기간은 업종·지역 등의 投資條件에 따른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10년 내지 30년의 활동기간이 인정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70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2. 經營權 및 利潤分配

베트남은 합작투자기업의 最高機構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구성은 持分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滿場一致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任命하는 社長 또는 首席副社長은 베트남인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北韓은 合營企業에 대해 북한측이 經營權을 행사하도록 하고 外國側 投資家에게는 契約條件에 따라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利潤을 分配하도록 하고 있으며 中國은 외국투자기업의 경영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을 理事會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사회 會長은 중국측이 副會長은 외국투자자측에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또한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合營企業 등의 정관개정, 증도해산 및 청산, 자본금의 증액 및 양도, 합영기업과 다른 경제조직과의 합병 등은 理事會의 全員一致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다.

利潤分配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당사자 각자의 出資比率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투자상환, 이윤분배를 恣意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각종 基金을 이사회가 결정한 비율로 우선 공제하고 當事者의 出資比率에 따라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의 해외송금에 관하여 베트남은 베트남에서의 企業運營에 의해 발생된 모든 果實의 送金을 보장하며 과실송금세는 5-10%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투자자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 청산후 남은 자금 등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화관리법에서는 외국

- 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는 會長이 합영기업의 法定代表가 되며 회장이 職責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경우 副會長이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理事들에게 代表權을 讓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外國人의 個人所得에 대해 勞賃과 기타 합법적 소득의 60%까지 해외송금을 인정하고 외국인투자자의 利益配當金의 해외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外國投資者가 기업활동으로 얻은 적법한 利潤, 기타 적법한 所得 및 清算 후의 資金과 外國人 종업원의 賃金所得은 국외에 送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海外送金保障 규정에도 불구하고 社會主義 開途國에 투자한 외국인인 공통적으로 果實의 해외송금에 대한 法規상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외화부족으로 인해 果實의 送金에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베트남, 중국, 북한의 화폐는 硬貨로 換錢이 되지 않는 不換性貨幣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勞働者雇傭

勞働者の 雇傭 및 解雇에 있어 베트남에서는 지방노동기관이 작성한 求職者 名簿³⁾를 검토하여 이들 중에서 채용하거나 외국투자기업을 관할하는 勞働者採用部署에 採用을 委託하거나 외국인회사가 노동자를 직접채용하고 地方勞働機關에 登錄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있다. 관리업무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동력을 베트남에서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으나 장래에 베트남인으로 대체할 훈련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베트남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使用者側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과 권한을 위임받은 베트남의 職能機關 그리

3) 求職者 名簿는 단순히 구직자의 명단을 게재하고 있을 뿐 拘束力을 갖지 않는다.

고 勞働者는 勞動契約書를 작성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어느 한 당사자의 願에 의해 破棄될 수 있으나 파기를 원하는 측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중대한 過失을 범하거나 계약에 따른 자신의 責任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사전 통보없이 파기될 수 있다.

북한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최대한의 勞動力 動員體制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직장배치 등 실제적인 勞動力의 管理를 노동행정기관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자 고용 및 해고에 관해서도 勞動行政機關을 통하도록 하고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운영과 관련한 노동인력을 기업소재지의 勞働機關과 맺은 契約에 따라 북한의 노동인력을 고용해야 한다.⁴⁾

이에 비해 중국은 노동자를 直接雇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외자기업은 종업원의 고용·해고에 있어서 地域內的 노동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노동자는 반드시 인근지역에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개적인 直接採用이 制限되어 있다.

4. 全額 外國人投資企業

베트남과 중국은 전액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許可地域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나 북한은 합작기업이나 합영기업과는 달리 외국인기업의 설립지역을 自由經濟貿易地帶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기업의 設立申請은 베트남에서는

4) 그러나 勞働人力的 解雇 여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업이 外國人 技術者, 技能工을 採用하고자 하는 경우 政務院 對 外經濟機關과 合議해야한다.

국가협력투자위원회(SCCI)에서 총괄하지만 북한의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서 심사와 인가를 하며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 짓는다.⁵⁾

전액 외국인기업의 設立承認處理期間에 대하여는 베트남이 신청후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북한은 외국인기업에 대하여는 신청후 80일 이내로 하고 합작기업에 대하여는 신청서 접수후 50일내로 하고 있다. 중국은 90일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액 외국인기업의 設立要件에 대해 베트남의 외자법은 아무 규정이 없으나 북한의 외국인기업법은 국가안전에 관련되거나 낙후기술기업을 제외한 전자공업, 자동차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서비스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외국인기업을 선진기술의 도입, 신제품의 개발, 에너지절약, 수입대체기업, 50% 이상 수출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5. 外國人投資企業과 관련된 租稅法制

(1) 稅制

베트남의 外國人投資관련 稅制는 외국투자기업이 생산 및 경영활동에서 얻은 利潤에 대한 法人所得稅, 외국인의 투자지분에 대해 할당된 이익금의 베트남 영역외 반출시에 적용되는 果實送金稅, 매출이 있는 생산, 건설, 운송, 상업, 요식업, 서비스활동을 하는 경제조직과 개인에 대한 賣出稅 베트남 기업의 기업자산이 아닌 베트남내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외국투자기업에

5) 중국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 關係省, 自治區, 直轄市, 人民政府 또는 國務院의 關係部·局에 認可를 委任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 資源稅, 輸出入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外國人投資관련 稅制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거래세, 상속세, 재산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 등이 있으며 企業稅는 북한에서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자산의 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등이 과세의 대상이다.

중국의 外國人投資관련 稅制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공업생산품과 농업생산품에 대한 工商統一稅, 建物 및 土地使用에 대한 도시부동산세, 차량·선박사용허가세 등이 있으며 相續稅는 없다.

(2) 法人所得稅

베트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法人所得稅率을 일반적으로 25%로 하고 투자장려분야에⁶⁾ 대하여는 15-20%의 법인세를 부과하며 특구내의 기업에 대하여는 租稅減免期間이 경과한 후 10%의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특구내 기업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 가스 및 기타 희귀자원에 관한 법인소득세는 國際慣例에 따라 이윤의 25%이상의 高率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企業所得稅率은 결산이윤을 기준으로 일반지역내의 기업 25%,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기업 14%, 투자장려부문의 기업에는 10%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첨단산업,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등

6) 베트남이 외국인의 投資를 장려하는 分野는 베트남의 經濟開發計劃을 보완하거나 수출지향적 제조업 및 수입대체산업, 첨단산업, 부존자원의 활용과 개발을 위한 長期資本投資 및 기존기업체의 生産性 向上, 5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勞動集約産業, 산업기반시설의 건설, 관광, 선박수리, 공항 및 항만용역, 기타 용역 등 外貨可得 用役業 등이다.

을 외국인투자장려분야로 지목하고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외에도 각종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권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 등을 약속하고 있다. 배당·이자·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되 자유무역경제지대의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의 法人所得稅率은 일반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액의 30%에 지방소득세율 3%를 포함하여 33%의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경제특구내의 기업에 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농업 및 농업에 이용되는 공업제품, 제당, 제련, 제지 등 경공업과 섬유공업,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기계전자공업, 첨단산업, 수출지향적 산업부문 등 외국인투자장려부문의 기업에 대해서는 15%로 세율이 정해져 있다. 1991년 4월 9일 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所得稅法은 특히 연해경제개방구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한 도시의 舊市街地에 위치한 제조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24%의 감면된 企業所得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3) 個人所得稅

베트남은 個人所得稅를 월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고 있다. 즉 월 3,000동⁷⁾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9,000동까지는 10%, 21,000동까지는 30%, 42,000동까지는 30%, 60,000동까지는 40%, 60,000동 이상에 대하여는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北韓은 북한내에서의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

7) 「동」은 베트남의 화폐단위로 自由兌換貨幣가 아닐 뿐 아니라 베트남내에서의 「동」화 가치도 매우 불안정하다. 1993년 3월 22일 현재 「동」화와 미국달러화의 換率은 VND10,462:US\$1 이다.

술비밀·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해 個人所得稅를 부과하고 있다. 外國人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에 의하면 個人所得稅率은 노동소득의 경우 보수액이 연 2,000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2천1원 부터 9천 원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액외에 4%에서 10%까지의 세율에 의한 세금을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밀·저작권제공에 의한 소득 등은 20%, 재산판매소득·개인기업소득은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⁸⁾

중국은 '中華人民共和國所得稅法'에 근거하여 임금 및 급여소득, 노동소득, 특허권 사용소득, 이자 및 주식배당에 의한 소득, 임대소득 등 개인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임금 및 급여수입에 대하여는 7 단계의 累進稅率을 부과하여 수입액이 800元 이하일 때는 면제하고, 800-1,500元일 경우 5%, 12,000元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임금 및 임대소득, 재산임대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20%의 比例稅率을 적용하며 그 중 노동소득, 특허권사용소득 등은 수입이 4,000元 이상일 경우 20%의 비용공제 후 나머지 수입액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자, 배당금, 특별수당소득과 기타 소득은 매번 수입액에 따라 납세하며 비용공제는 없다. 개인소득세의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납세세액은 國務院의 規程에 의해 1987년 8월 부터 法定稅率의 50%만을 징수하고 있다.⁹⁾

8) '93년 1월 31일 공포된 북한의 「外國人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은 기존의 외국인투자관련법보다 비교적 구체적이고 외국투자가들에게 적용할 稅制를 하나로 묶었을 뿐만 아니라 稅率도 다소 낮게 책정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는 북한이 外資誘致面에서 중국, 베트남과 競爭關係에 있는 만큼 유리한 지위를 先占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9) 北方地域센터, 中國便覽, 1992, p. 269.

(4) 法人所得稅 減免制度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세계각국의 立法例는 일반적으로 본국의 정치정세와 경제력 등을 고려한 호의적인 投資環境을 조성하고 거의 예외없이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특별한 優待措置를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투자장려분야의 합자기업에 대하여 黑字運營이 시작된 때로부터 2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투자장려분야의 외국투자기업이 低開發狀態의 僻地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거나 造林, 기타 國民經濟에 중요한 的의를 갖는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이익의 10%로 하고 흑자경영이 시작된 때부터 최고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계속해서 최고 4년간 법정세율의 50%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危險(risk)이 많이 따르는 事業分野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액 외국인기업과 외국인개인이 3년 이상 投資持分에 대한 이익배당을 再投資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 납부액을 환급해 준다.¹⁰⁾

特區(EPZ)내 설립된 제조업체는 모든 수입장비, 원부자재, 필요자재 및 수출용 상품에 대한 關稅가 免除된다. 또한 이익발생 初年度를 기점으로 제조업체는 4년간(외국인투자법에는 2년으로 규정), 서비스업체는 2년간 법인세 면제를 포함한 조세감면혜택을 받는다. 免除期間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조업체의 경우 순이익의 10%, 서비스업체에는 순이익의 10%가 부과된다.

북한은 외국정부와 국제금융기관이 북한에 借款을 제공한 경우, 외국은행

10) 베트남내 외국인투자기업의 所得稅減免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것은 Vo Van Quoi, "Exemption and Reduction of Income Tax in Regard to Foreign Invested Capital Enterprise", Vietnam Economic News, (1993. 4.30 - 5.7.), pp.24-25.

이 북한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의 貸付를 해준 경우에 그에 대한 利子所得稅를 免除해주고 있다. 또한 장려부문과 自由經濟貿易地帶 안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¹¹⁾ 그리고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다음 2년간은 50%범위 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自由經濟貿易地帶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이 지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물지 않으며 이익발생년도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다음 2년간은 소득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받고 그 이후의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 보다 낮은 14%로 하고 있다. 社會間接資本建設部門에 종사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총투자액 6000만원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¹²⁾

중국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장려부문의 기업에 대하여는 지역에 관계없이 이익이 최초로 발생한 년도부터 2년간 法人所得稅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¹³⁾ 經濟特區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경제특구에서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외자기업 그리고 經濟技術開發區에 설립된 제조업 분야의 외국투자기업에

-
- 11) 외국인투자기업이 10년 이내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 받았던 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12) 외국투자자가 利潤을 再投資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再投資持分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下部構造建設部門에 재투자한 경우에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 13) 단 석유, 천연가스, 희귀금속, 귀금속 등의 資源開發項目에 속하는 것은 별도의 國務院 規程에 따른다.

대하여는 15%의 감면된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수출기업과 선진기술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法人所得稅를 면제해주고 그후에는 계속 5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用水, 電氣, 輸送 및 通信施設을 현지의 국영기업과 동일 수준의 요금으로 우선적인 제공을 한다. 先進技術企業에 대하여는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의 세금을 감면해줄 뿐만 아니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結 語

베트남이 도이모이(Doi Moi)政策을 시행한지 7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의 自國內 투자환경에 대한 法的, 制度的 改善努力은 외국자본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는 성공을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投資對象으로서 베트남시장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은 베트남이 대외개방정책을 加速化하고 있어 초기경제개발에 따른 政府支援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이 제정한 각종 외국인투자관련 國內法의 內容이 불분명하고 그 適用이 예측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관련 法規의 存在 자체는 안정적인 投資環境의 造成과 외국인투자자에게 投資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베트남정부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정부는 자국에 대한 지속적이고 원활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誘引하기 위해서 현행 外國人投資관련 法制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외국인투자관련 法規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法制의 整備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외자법이나 특구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베트남정부의 恣意的 解釋의 가능성을 줄이고 外

國人投資保護法, 破産法, 資本 및 技術 이전에 관한 法律, 住宅事業關係法, 都市開發法 등 외국인투자 관련法規 및 施行細則을 체계적으로 立法化하여 공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法令構造의 體系化와 함께 法治主義(rule of law)가 강화되어야 한다. 社會主義 國家의 法理念은 법을 정치의 下位概念으로 보기 때문에 法的 安定性 보다는 法運營의 彈力性을 중요시하여 관계당국의 裁量이 法에 우선하는 制度하에서 관료주의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등 法이 경제사회생활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社會主義 體制內에 資本主義的 市場秩序의 導入은 이념과 경제 사이에 괴리와 갈등을 발생시키고 이는 司法的 側面에서 法規의 無用化와 立法的 側面에서 法規의 빈번한 變更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법규의 변경은 언제나 개방의 가속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투자시에 적용되던 법규의 변경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입게될 損害의 保護를 위한 法制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¹⁴⁾

세째, 外國人投資關聯法이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地方政府의 수준에서도 外資導入促進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條例立法의 擴大와 외자기업의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干渉을 줄이고 과다한 公課金의 賦課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國家協力投資委員會(SCCI)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성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14) 韓·베트남 投資保障協定은 協定の 終了前에 행하여진 投資에 대해 協定の 條項을 終了日로부터 20년간 계속하여 適用하도록 하고 있다. (제12조 3항)

네째, 외국인의 자본투자 또는 외자도입과 관련된 法的, 制度的 情報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公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情報의 遲滯(lag of information)현상은 투자자들의 投資心理를 불안케하고 法制的 不知로 인한 투자관련 紛爭을 증가시키므로 베트남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책임있고 개방적인 베트남의 法制整備는 베트남을 아시아의 새로운 신흥공업국(NICS)의 하나로 등장시키는 基礎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 對베트남 투자를 하려는 우리나라의 法人 및 個人은 베트남投資決定에 앞서 경제적 측면에서 베트남의 전체적인 전력, 도로·항만, 철도 등 社會間接資本의 부족과 낙후성, 그리고 이념적 측면에서 베트남이 아직 社會主義國家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投資誘引으로써 베트남의 天然資源과 미개발의 內需市場은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과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중 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등의 교통수단과 우편 및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보수하는데는 앞으로 5년동안 연 4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UN開發基金은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支援金은 연간 200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베트남의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하는데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世界銀行(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으로 부터의 借款導入이지만 이는 미국의 拒否權行使로 지연되고 있었다.¹⁵⁾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禁輸措置撤回을 포함한 미국과 베트남의 關係正常화가 이루어진다면

15)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베트남전의 실종미군(MIA)과 미군포로문제에 대한 베트남측의 협조노력을 인정하여 國際通貨基金(IMF)의 베트남에 대한 借款提供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 조선일보, ('93.7.2. 7면)

그만큼 획기적으로 베트남의 投資環境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이 外資法의 改正을 통해 건설-경영-양여(BOT)건설수주방식을 도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목적을 둔 것이다. 그리고 社會主義 體制가 갖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산성문제, 行政組織의 비효율성, 자본주의적 契約概念에 대한 무지, 商去來秩序 및 商慣習의 부재,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사이의 경제적 발전수준의 현격한 차이, 外國人投資法制와 政策의 不一致, 국내법체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不安定 등도 현존하는 베트남 投資市場의 한계이며 베트남정부관리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非專門性도 投資協商에서 극복해야할 베트남진출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정부는 다른 東南亞國家와의 外資誘致를 위한 경쟁상황 하에서 적극적인 외국인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베트남 국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法律 및 制度의 整備作業 등을 서둘러야할 것이며, 對베트남투자자의 國籍國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法的 安定性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과 投資保障관련 兩者條約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 國內法상의 미비점을 보완·보충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베트남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國內法整備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나라 투자자의 法的 保護를 위한 投資保護관련 兩者條約을 체결하도록 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에 체결된 「한·베트남 貿易協定」은 수출·입 관세 와 관련절차 및 수출·입 대금결제방식에 있어 상호간에 最惠國待遇를 규정하고 자국내의 상대방국가 법인 및 자연인의 신체와 재산보호에 대한 最惠國待遇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貿易協定の 이행을 검토하고 협정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토의 및 해결을 위해 양국간의 경제기술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貿易實務委員會를 설치하여 양국이 연 1회 교대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貿易協定

의 締結 이후에 보다 성실한 協定履行을 위해 共同委員會를 設置하고 定例的인 會議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貿易協定の 체결만으로는 양국간의 다양한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法的 保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投資의 相互促進·保障과 관련하여 체결되어야 할 다양한 兩者協定の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投資의 增進 및 保護에 관한 協定」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의 허가 및 투자보호, 투자자의 대우 및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반란, 폭동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原狀回復, 賠償, 補償에 있어서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차별적 國有化 또는 收用의 禁止 및 적법한 國有化, 收用に 대한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¹⁶⁾ 자유태환성화폐에 의한 果實送金保障, 양국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代位權 認定, 투자분쟁의 해결방법에 있어 一方當事者에 의해 제기된 분쟁이 6개월내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 兩當事者에 대해 최종적이며 拘束力을 갖는 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의 판정에 의한 紛爭解決,¹⁷⁾ 협정의 발효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한 협정의 적용, 협정이 종료하더라도 종료전의 투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협정의 조항을 적용함 등

16) 國際法상 國有化에 따른 補償原則으로써 迅速의 要件은 國有化조치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補償할 것을 의미하며, 適切이라 함은 國有화된 財産의 價値에 비례하는 補償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有效性의 原則은 보상이 硬貨(예컨대 미국달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17) 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이하 ICSID)에 의한 투자분쟁의 해결은 베트남이 「國家와 他方國 國民間의 投資紛爭解決에 관한 1965년 워싱턴協約」의 當事國이 된 이후에 가능하다.

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投資收益에 대한 원천과세의 면제 및 적용세율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소득을 한정하고 소득원천의 판정 및 과세소득의 계산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는 「二重課稅防止를 위한 兩者協定」의 체결과¹⁸⁾ 최근 체결된 航空協定 이외에, 漁業協定, 經濟技術協力協定, 科學技術協力協定, 文化協定 등 각 분야별 雙務條約의 締結을 통해 베트남투자자의 投資資產 保護와 관련된 베트남내의 정치적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法的 投資保護裝置가 마련되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과 투자자의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와 같은 協定의 체결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企業에 紛爭이 발생했을 때, 우리 政府가 당해 기업의 권리나 이익을 대신 행사하여 (代位權) 企業間의 紛爭을 政府間의 次元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18) 우리나라 현행법상 활용할 수 있는 二重課稅防止措置로는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海外投資損失準備金制度가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외투자의 유형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二重課稅防止協定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투자한 대부분의 우리 企業은 二重課稅를 피할 수 없다.

19) 베트남은 '93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2개 國家와 投資保護協定을 체결하였으며 2개 國家와 二重課稅防止協定을 체결한 상태이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제정 : 1987. 12. 29

개정 : 1990. 6. 30

1992. 12. 23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국가경제의 발전 및 자연자원, 노동력 및 기타 국가적 잠재력의 효율적 개발에 의한 수출 증진을 위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16조, 제21조 및 제83조에 따라서,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의 외국조직 및 개인에 의한 투자를 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외국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의 독립 및 주권 존중, 법률준수 및 평등과 상호호혜에 입각한 자본 및 기술투자를 환영하며 장려한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조직 및 개인의 투자자본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하며 외국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간편한 절차를 마련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측 당사자"라 함은 1인 또는 다수의 개인 또는 외국법인체를 의미한다.
2. "베트남측 당사자"라 함은 모든 경제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경제법인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당사자이다.

3. “외국투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조직이나 개인의 경영합작계약과 합작기업 및 100% 외국자본기업 설립을 위해서 베트남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화나 기타 자산의 대베트남 직접 투자를 의미한다.
4. “양당사자”라 함은 베트남측과 외국측을 말한다. “여러 당사자”라 함은 베트남측과 수개의 외국측 또는 외국측과 수개의 베트남측 또는 수개의 베트남측과 수개의 외국측을 말한다.
5. “경영합작계약”이라 함은 양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가 서명한 경영협력을 위한 서면계약을 말한다.
6. “합작계약”이라 함은 합작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양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계약 또는 기존의 합작기업과 외국조직 및 개인이 서명한 베트남내 합작기업 신설계약을 말한다.
7. “투자지분”이라 함은 합작기업 자본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외국측 또는 베트남측의 출자자본을 말하나, 기업의 차입금이나 합작기업에 제공된 다른 신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8. “재투자”라 함은 합작기업 최초출자 지분의 증자나 본법 제4조에 규정된 형식의 신규투자를 위해 이익금의 일부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9. “수권자본”이라 함은 기업정관에 명시된 합작기업의 최초자본을 말한다.
10. “합작기업”이라 함은 양자 또는 다자간의 합작계약 또는 베트남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에 기초하여 베트남내에 설립된 기업이나, 합작기업계약을 기초로 하여 외국조직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합작기업이 베트남에 설립한 신설기업을 말한다.

다.

11. “100% 외국자본기업”이라 함은 외국조직, 개인이 100% 자본을 소유하고 베트남정부가 베트남내에 설립을 허가한 기업을 말한다.
12. “외국투자기업”은 합작기업 또는 100% 외국자본기업을 말한다.
13. “수출가공구”라 함은 수출상품생산, 상품의 생산과 수출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전담하고 일개 또는 수개의 기업을 포함하는 공업구이며 정부가 설정한 고유영역을 말한다.
14. “수출가공구기업”이라함은 수출가공구내에 설립되어 활동하는 기업을 말한다.
15. “건설-운영-양여계약(BOT)”이라함은 외국조직, 개인과 베트남 공인기관간에 일정시한내 하부구조시설을 건설, 운영하기위해 서명된 문서이며 기한이 종료한 때 외국조직, 개인은 보상없이 베트남정부에 양여해야 한다.

제3조 외국조직, 개인은 베트남 국가경제 모든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베트남정부는 다음 분야에 대해 외국조직, 개인의 투자를 장려한다.

1. 주요 경제계획이행, 수출지향적 생산, 수입대체
2. 첨단기술, 숙련노동력 이용, 잠재자원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기존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중투자
3. 노동집약적이고 베트남 천연자원 및 원료를 사용하는 생산
4. 산업기반시설 건설
5. 관광, 선박수리, 공항, 항만 및 기타 서비스 등 외화가득 서비스

사업

외국인투자가 장려되는 세부분야는 외국투자관리국가기관에서 공포한

다. 베트남 민간경제조직은 각료회의가 정한 경제부문과 조건에 따라서 외국조직 및 개인과의 경영합작이 허용된다.

제2장 투자형식

제4조 외국조직, 개인은 다음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1. 경영합작계약
2. 일반적으로 합작기업이라 지칭되는 합작사업 혹은 합작회사
3. 100% 외국투자기업

제5조 경영합작계약에 따른 양당사자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는 경영합작계약에 의하여 생산분배 또는 기타 형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양측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 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해 합의해야하며 경영합작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제6조 양당사자 또는 그이상의 당사자는 합작기업을 설립하는데 협력할 수 있다. 그 합작기업은 베트남에 합작기업의 신설을 위하여 외국조직 및 개인과 협력할 수 있다.

각 합작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의한 법인체이어야 한다.

제7조 합작기업의 외국측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권자본에 출자할 수 있다.

1. 외화
2. 플랜트, 건물, 장비, 기계, 공구, 부품
3. 특허권, 기술노하우, 기술적가공, 기술서비스

합작기업에 참가하는 베트남측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권자본에 출자할 수 있다.

1. 베트남 통화, 외화
2. 베트남 정부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
3. 건축자재 및 시설물
4. 베트남 정부의 규정에 의한 토지, 수면, 해면사용권의 가치
5. 공장, 기타 건설, 장비, 기계 및 부품
6. 플랜트의 건설 및 운영서비스, 특허권, 기술노하우, 기술적가공
및 기술서비스

양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다른 형태의 자본출자를 할 수 있다.

제8조 합작기업의 수권자본에 대한 외국측 출자비율의 최고 한도는 없으나 최소한 양측이 출자한 총수권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수당사자에 의한 합작기업의 경우 각 베트남측의 최저자본출자비율은 각료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각 당사자에 의한 출자금액은 국제시장가격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베트남 통화 또는 외화로 합작기업의 정관에 표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결정한 주요경제 부문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 베트남측의 출자비율은 모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제9조 합작기업의 모든자산은 양측합의에 의하여 베트남 보험회사나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 양당사자들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고 합작기업과 관련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제11조 양당사자들은 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품의 수출비율과 베트남 내 판매비율에 합의해야 한다. 기업의 정상적인 가동과 외국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과 기타 다른 출처에서 얻은 외화는 합작기업의 필요 외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 합작기업을 통할하는 기구는 이사회이다. 각 당사자는 합작기업 수권자본금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이사회에 이사를 임명한다. 양당사자만의 합작기업인 경우 각 당사자는 이사회에 최소한 2명의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대표이사는 양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해 임명된다. 사장과 부사장은 합작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합작기업의 운영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장 또는 수석부사장은 베트남 국민이어야 한다.

제13조 기업의 경영목표, 경영계획 및 경영진과 같은 합작기업의 조직과 운영의 중요문제들은 이사회에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14조 외국조직 및 개인은 100% 외국자본기업을 베트남에 설립할 수 있다. 외국조직 및 개인은 기업운영에 책임을 져야하며 외국투자관리국가기관의 통제를 받는 한편 투자인가서에 명시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0% 외국자본기업은 베트남 법률의 구속을 받는 법인체이어야 한다.

베트남정부의 결정에 따라 베트남 법인체에게 기업주의 동의를 얻어 주요 경제부문에 속한 100% 외국자본기업으로부터 점진적인 지분의 매입이 허용된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의 활동시한은 정부가 개별 프로젝트별로 결정한다. 그러나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상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시한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베트남 국민은 외국투자기업의 인력고용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고급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베트남인중에 해당자가 없으면 기업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는 노동계약에 규정되어야 한다. 베트남인 피고용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은행에 개설된 합작기업의 계좌로부터 베트남 통화 또는 외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은 베트남은행 또는 합작은행 또는 베트남내 외국은행 지점에 베트남통화와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해외의 은행에 자본차입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투자기업은 베트남 재무부가 승인한 보편화된 국제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두어야하며 베트남 재무당국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자본이양, 해체는 기업정관에 따라야 하며 베트남 법률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관리국가기관에 의해 기업정관의 등록일자로부터 법인체의 지위를 갖는다.

외국조직, 개인에게는 이 법 제4조에 규정된 형식으로 베트남 수출가공구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모든 경제부문의 베트남경제법인은 이 법 제4조 1, 2항에 규정된 형식 또는 100% 외국자본기업의 형식으로 수출가공구에 투자하는 외국조직, 개인과 협력할 수 있다. 국내기업과 수출가공기업간의 상품교환은 수출입거래로 간주되며 수출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정부는 수출가공구와 수출가공구기업을 합법화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한바 있다.

베트남의 산업기반시설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조직, 개인은 베트남 국가공인기관과 건설-운영-양여계약(BOT)을 체결할 수 있다. 외국조직, 개인은 계약에서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운영-양여(BOT)계약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3장 투자보장 조치

제20조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조직, 개인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21조 베트남으로의 투자과정에서 외국조직, 개인의 자본과 재산은 행정조치에 의해서 징발이나 압수되지 않는다. 외국투자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베트남 법률의 변경으로 경영합작계약에 참가한 각측과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국가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조직이나 개인은 다음을 해외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1. 경영과정에서 얻은 이익배당금
2. 기술이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금
3. 기업활동과정에서 대출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4. 투자자본
5.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 및 자산

제23조 외국투자기업이나 경영합작계약의 이행을 위해 베트남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인 베트남 법규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베트남 외화관리규정에 따라 자신의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4조 베트남화의 외국환으로의 태환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포한 공식환율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제25조 경영합작계약이나 합작계약에서 양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합작기업, 100% 외국투자기업과 베트남 경제조직 또는 다른 외국투자기업간의

분쟁들은 협상과 화해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베트남 경제중재기구나 다른 중재 또는 사법기구에 회부해야 한다.

제4장 외국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26조 외국투자기업과 경영합작계약을 체결한 외국측은 이익금의 15% 내지 25%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유, 가스 및 기타 고가의 희귀 자원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라 높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27조 투자지역, 투자분야, 자본출자규모, 수출규모, 현재까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의 수입대체 규모, 사업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합작기업은 외국투자관리국가기관에 의하여 최초 이익발생 년도부터 최장 2년간 법인세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후 최장 2년간 법인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다.

어느 년도에 합작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은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그해의 이익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결손보전후의 잔존손실은 5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월될 수 있다.

투자장려가 필요한 경우 100%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우대조치가 제공될 수 있다.

제28조 투자장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국투자관리기관은 이익금의 10%까지 법인세를 감해줄 수 있으며 면세 및 감세기간은 이 법 제27조에 규정된 기간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

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합작계약의 외국측은 베트남의 토지, 해면, 수면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천연자원개발의 경우 로열티

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0조 법인세 납부후 합작기업은 잔여이익금의 5%를 적립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한 적립금은 기업수권자본금의 25%로 제한된다. 다른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사용될 이익금의 비율은 양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기업정관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종업원들을 위한 사회보험금을 베트남 정부예산에 납부한다.

제32조 외국조직, 개인이 이익배당금의 일부를 재투자한 경우 세무당국은 재투자분에 대한 기납부 법인세를 환급해 준다.

제33조 소득의 해외송금시 외국조직, 개인은 외국 송금액의 5% 내지 10%를 송금세로 납부해야 한다. 외국투자관리국가기관은 투자장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송금세를 면제 또는 감해 줄 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은 활동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 또는 경영합작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수출입 상품은 수출입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투자관리국가기관은 투자장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출세를 면제 또는 감해줄 수 있다. 수출가공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1. 수출가공구로부터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과 외국으로부터 수출가공구로 수입하는 상품은 수출세, 수입세가 면제된다.
2. 이 법 제28조, 제33조에 규정된 우대세율을 향유하며 정부는 각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고정우대세율을 결정해야 한다.

제5장 외국투자관리국가기관

제36조 베트남 정부의 외국투자관리국가기관은 베트남내의 외국조직, 개인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외국투자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경영합작계약, 합작계약, 건설-운영-양여계약 상담과 계약체결과 정에서 외국측과 베트남측을 지원. 100%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조직, 개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수행.
2. 경영합작계약, 합작계약, 건설-운영-양여 계약을 검토, 승인하고 외국조직 및 개인의 100% 외국자본투자기업 설립을 인가하며 외국투자기업의 정관을 승인.
3. 외국투자기업과 경영합작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우대조치 결정 및 부여.
4. 경영합작계약의 이행과 외국투자기업의 활동을 감독.
5.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분석.

제37조 경영합작계약, 합작계약 및 100% 외국자본기업설립 승인신청서, 투자우대신청서는 당사자들 또는 외국투자기관 또는 개인이 외국투자관리국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경영합작계약서, 합작계약서, 합작기업 또는 100%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관, 사업성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검토보고서 및 외국투자관리국가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8조 외국투자관리국가기관은 신청서를 심사,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승인은 투자허가서의 발급에 의해 통보되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39조 이 법에 규정된 제원칙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조국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베트남 투자를 위한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40조 이 법에 규정된 제원칙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과 외국간의 경제관계에 부합되는 투자협력에 관한 협정을 외국정부와 체결할 수 있다.

제41조 1977년 4월 18일의 시행령(No.115-CQ)으로 공포된 베트남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칙과 이 법에 저촉되는 기타 모든 규정은 폐기한다.

제42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시행령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 법은 1992년 12월 23일 베트남 국회 제9차 2기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懸案分析 93-4 베트남의 外國人投資關聯法制

1993년 7월 25일 印刷

1993년 7월 30일 發行

發行人 李 世 薰
發行處 韓 國 法 制 研 究 院
印刷處 韓 國 컴퓨터 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값 1,200원

